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20다224883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12. 10 선고 2020나32166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20다224883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3. 17 선고 2019나668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3. 17 선고 2019나668 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 8. 13 선고 2019가소438 판결

전문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B

판결 선고 2020. 8. 27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3. 17. 선고 2019나66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이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서증은 문서에 표현된 작성자의 의사를 증거자료로 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방법이므로 우선 그 문서가 작성자로 주장되는 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으며,그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 다음 비로소 작성자의 의사가 요증사실의 증거로서 얼마나 유용하느냐에 관한 실질적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9655 판결 등 참조), 사문서에 있어서 그 진정성립을 상대방이 다툴 경우에는 문서 제출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1549판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피고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채권은 G 주식회사에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채권양수도증서 겸 통 지서(을제2호증,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도증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수도증서에 날인된 원고 명의의 인영은 원고가 사용하는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서 그 진정성립을 다투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수도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사실 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채권양수도증서의 진정성립이 먼저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제출자인 피고에게 있으나,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채권양 수도증서의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채권양수도증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그 기재에 의하여 채권양도사실 등을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주 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